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 안 번 호	169

제출연월일 : 2000. 9 .21
제 출 자 : 이경진의원외6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

나. 심사기간은 2000. 9. 29.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, 평창군수 및 지방의회 의원으로부터 제출(발의)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 사 계 획

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목적

○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

○ 신속한 의사진행

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

○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○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○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○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
○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○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
○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○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○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
○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
○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

3. 활동기간

○ 2000년 9월 29일 1일간으로 한다.

4.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

○ 이경진의원, 강석주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김완규의원, 우강호의원, 김진석의원